相續課稅의 現況 및 改善方向

金 明 淑

本 硏究는 우리나라 相續課稅의 現況과 問題點을 檢討하고 그 改善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相續課稅의 機能强化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련제도의 整備를 통해 相續 및 贈與財産捕捉率을 提高하고 財産評價의 公平性을 確保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相續稅 및 贈與稅 稅制改善의 필요성도 높다고 생각되는바 그 基本方向은, 첫째로 相續稅 및 贈與稅의 課稅類型을 取得課稅型으로 통일하고 相續·贈與 및 贈與累積合算期間을 상당기간 연장하며, 둘째로 住宅控除, 農地·草地·山林地控除, 企業相續控除 등 특정형태의 財産에 대한 공제는 폐지하고 각종 人的控除는 配偶者控除, 未成年者控除, 障碍者控除의 세가지로 가지수를 줄이며, 그 수준을 현실화하되 특히 配偶者控除의 水準을 大幅 擴大하며, 셋째로 전술한 不動産評價의 現實化, 合算期間의 長期化, 각종 控除의 廢止 등으로 相續稅 및 贈與稅 課稅財産의 課標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稅率의 課標別 水準 및 累進程度를 下向調整하는 것이다.

Ⅰ. 序 論

우리 社會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分配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租稅의 再分配機能의 確立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能力 및 教育機會의 差異, 富의 蓄積과 世代間 移轉으로 인해 자본주의사회에서 所得 및 富의 不均等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所得 및 富의 不均等을 정책적으로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는 무엇보다도 租稅의 再分配機能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所得과 富의 再分配를 기본목적으로 하는 租稅로는 所得稅, 財産稅, 相續稅 및 贈與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相續稅 및 贈與稅는 稅收規模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나 재산세 못지않게 그 政策的 重要性이 크게 인정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相續課

筆者 : 本院 硏究委員

稅가 分配正義의 實現을 위한 가장 중요한 政策手段의 하나로 인식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世代間의 財産移轉은 機會의 不均等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일 뿐 아니라 富의 不均等을 유발하는 주된 要因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속과세의 정책적 중요성에 비추어 本 硏究는 우리나라 相續課稅의 現況과 問題點을 검토하고 아울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第2章과 第3章에서 相續稅 및 贈與稅 稅制의 現況과 賦課狀況을 차례로 분석·검토한 다음 第4章에서 相續稅 및 贈與稅 관련제도의 정비와 稅制改善의 基本方向을 제시하려고 한다.

Ⅱ. 相續課稅制度의 現況

相續課稅는 相續稅와 이를 보완하는 贈與稅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형태는 크게 遺産課稅型과 取得課稅型으로 구분된다. 遺産課稅型은 피상속인의 遺産이나 증여자의 贈與財産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며 取得課稅型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사람별로 取得財産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OECD가맹국 중 美國·英國·뉴질랜드가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밖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취득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遺産課稅型을 취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의 遺産을 相續分에 따라 상속인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분할된 遺産總額에 대해 累進稅率을 적용, 稅額을 산출하고 그 세액을 遺産取得比率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贈與稅는 相續稅와 달리 取得課稅型으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者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그의 3년간 累積 受贈財産價額에 累進稅率을 적용,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 相續課稅制度는 1934년 朝鮮相續稅令의 공포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수립후인 1950년 3월 相續稅法이 새로 제정 공포된 이후 여러 차례의 改正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相續稅 및 贈與稅制度의 주요 내용을 현행제도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2].

1. 相續稅

相續稅 課稅財産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될 수 있다.

相續稅課稅財産 = 相續財産 + 死亡前 贈與財産 + 擬制相續財産 - 非課稅財産

이를 항목별로 세분하여 설명하면 〈表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相續稅 課稅財産의 評價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時價에 의하도록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相續稅法 施行令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相續稅法 第9, 10條, 相續稅法 施行令 第5條, 第5條의 2, 第6條, 7條)[3]. 실제에 있어서는 時價算定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이 별도규

1) 이탈리아는 遺産課稅型 相續稅와 取得課稅型 相續稅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Sandford (1987) 참조.

2) 상세한 내용은 崔明根(1987), 金冕圭(1987) 및 陳行燮(1988) 참조.

3) 贈與財産의 評價도 相續財産評價規定이 준용됨(相續稅法 第34條의5, 施行令 第42條).

〈表 1〉 相續稅 課稅財産의 範圍

相續財産	(被相續人의 住所가 國內가 아닌 경우에는 國內에 있는 財産에 局限됨)
死亡前 贈與財産	· 相續開始 3년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증여한 財産 (相續稅法 第4條 第1項) · 相續開始前 1년내에 相續人 아닌 사람에게 贈與한 財産 (同法 第4條 第2項)
擬制相續財産	
相續財産 看做	· 保險金 請求權(同法 第7條 第1, 2項, 施行令 第3條) · 信託財産(同法 第7條 第3項) · 退職手當등(同法 第8條)
相續稅 課稅價額 算入	· 相續開始日前 1년이내에 被相續人이 處分한 財産이나 債務負擔金 중 用途가 불분명한 것(同法 第7條의2)
非課稅財産	
課稅價額 不算入	· 公益事業에 出捐한 財産 (同法 第8條의2 第1項, 施行令 第3條의2) ·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寄附한 財産등 (同法 第8條의2 第2項, 施行令 第4條)
相續稅 非課稅	· 戰死등으로 死亡한 者의 相續財産 (同法 第13條, 施行令 第10條)

정에 의해 시가와 다르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재산종류별 相續稅 負擔의 不公平問題가 야기되고 있다. 예컨대 상속세 과세재산의 주종인 不動産은 시가의 20~30%로 크게 저평가되고 있는 반면 非上場株式은 시가에 비해 오히려 과대평가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4].

相續稅 課稅財産 評價額에서 公課金, 피상속인의 葬禮費用, 債務를 공제한 금액을 相續稅 課稅價額이라 하고(相續稅法 第4條)[5],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다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相續稅 課稅標準인바(相續稅法 第12條), 각종 공제의 내역은 〈表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相續稅 課稅價額控除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외에 農地, 草地, 山林地相續控除, 山林相續控除, 住宅控除, 企業相續控除가 차례로 도입·시행되고 있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相續財産控除制度의 특징은, 첫째로 基礎控除와 人的控除, 특히 配偶者控除의 수준이 낮으며, 둘째로 其他控除의 종류가 많고 그 控除限度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한도가 각각 1,000萬원과 4,000萬원인데 비해 住宅控除의 한도는 1億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遺産課稅型 相續稅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美國과 英國의 경우 相續稅 課稅價額控除가 기초공제

4) 崔明根(1987), pp. 22~29 및 陳行燮(1988), pp. 44~79 참조.
5) 被相續人이 國內에 住所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葬禮費用은 공제하지 않음.

〈表 2〉 相續稅 相續財産控除의 變遷

	'61. 1. 1	'68. 1. 1	'72. 1. 1	'75. 1. 1	'77. 1. 1
① 基礎控除 (相續稅法 第5條)	50萬원	150萬원	300萬원	600萬원	800萬원
② 人的控除 (相續稅法 第11條, 施行令 第8條)					
· 配偶者	5萬원	50萬원	150萬원	500萬원	800萬원
· 子 女					
· 未成年者	5萬원	20萬원+ (5萬원×20歲 에 달하기까 지의 年數)	左 同	30萬원+ (10萬원×20歲 에 달하기까 지의 年數)	24萬원× 20歲까지의 年數
· 年老者	5萬원	20萬원	40萬원	60萬원	100萬원
· 不具廢疾者	5萬원	20萬원	40萬원	60萬원	180萬원
③ 1住宅控除 (相續稅法 第11條의2, 施行令 第8條의2)					
④ 農地相續控除					
⑤ 農地·草地·山林地 相續控除(相續稅法 第11條의3, 施行令 第8條의3)					
⑥ 山林相續控除 (相續稅法 第11條의4)				租減(73. 1. 1) 免稅	左 同
⑦ 企業相續控除 (租減法 第67條의9)					

註 : 1) 被相續人이 國內에 住所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相續稅 基礎控除만 許容됨.
資料 : 財務部 稅制局.

'79. 1. 1	'80. 1. 1	'82. 1. 1	'83. 1. 1	'88. 1. 1	'89. 1. 1
	800萬원		1,000萬원	左 同	左 同
左 同	1,600萬원 24萬원×20歲 까지의 年數 100萬원 180萬원	左 同	2,000萬원 1人當 500萬원 40萬원×20歲 까지의 年數 300萬원 800萬원		4,000萬원 1人當 1,000萬원 100萬원×20歲 까지의 年數 1,000萬원 1,000萬원
		4,000萬원(단 ①+② 포함)	6,000萬원(단 ①+② 포함)	左 同	1億원(단 ①+② 포함)
120萬원×(21歲부터 相續開始時까지 農業從事年數)	左 同	削 除			
	79. 1. 1~81. 12. 31, 120萬원 ×21歲부터 農業從事年數	農地 : 6千평 草地 : 3萬평 山林地 : 3萬평 5千萬원 限度[1]	農地 : 6千평 草地 : 3萬평 山林地 : 6萬평 ①+②+③포함 7千萬원 限度[1]	左 同	農地 : 9千평 草地 : 3萬 5千평 山林地 : 6萬평 ①+②+③포함 1億 1千萬원 限度[1]
租減(78. 1. 1) 50%免除	左 同	5年以上 山林 全額 免稅	左 同	左 同	左 同
				5年以上 繼續한 中小自營事業을 相續받은 경우 : 財產價額의 20% 控除	左 同

〈表 3〉 相續稅稅率의 變遷

(단위 : %)

課標	'67. 11. 29	'74. 12. 21	'79. 12. 28	'81. 12. 31	'82. 12. 21	'88. 12. 26
200千원以下[1]	5					
200 " 超過	10					
500 " 以下		10				
500 " 超過	15	12				
1,000 " 以下			7 (8.4)	7 (8.4)	左同	
1,000 " 超過		15	10(12.0)	9(10.8)		
2,000 " 超過	20					
3,000 " 以下						5 (6)
3,000 " 超過		20	13(15.6)	11(13.2)		10(12)
5,000 " "	30	25	17(20.4)	13(15.6)		
7,000 " "		30	21(25.2)	15(18.0)		
10,000 " "	40	35	25(30.0)	17(20.4)		15(18)
13,000 " "			29(34.8)	20(24.0)		
15,000 " "		40				
19,000 " "			33(39.6)	25(30.0)		
20,000 " "		45				
25,000 " "			37(44.4)	30(36.0)		
30,000 " "	50	50				20(24)
35,000 " "			42(50.4)	35(42.0)		
50,000 " "		55	47(56.4)	40(48.0)		
60,000 " "						25(30)
70,000 " "		60	52(62.4)	45(54.0)		
100,000 " "	60	65	57(68.4)	50(60.0)		35(42)
300,000 " "		70	62(74.4)	55(66.0)		
500,000 " 以下						45(54)
500,000 " 超過	70	75	67(80.4)	60(72.0)		55(66)

註 : 1) 課標가 課稅最低限(1974년까지는 10萬원이고 그 이후는 20萬원임) 미만인 때에는 相續稅가 賦課되지 아니함 (相續稅法 第12條).
2) ( )안의 수치는 부가세인 防衛稅(세액의 20%)를 포함한 것임.
資料 : 財務部 稅制局.

와 배우자공제로 대별되는바 기초공제한도가 각각 47萬달러(韓貨 3億 7,600萬원)와 7萬 1,000파운드(韓貨 9,230萬원)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부부의 공동소유권을 인정하여 配偶者相續分에 대해서는 相續稅가 전액 면제되고 있다[6].

다음으로 우리나라 相續稅 稅率構造를 살펴보면 〈表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난 1979년 이후 몇차례의 稅法改正으로 각 과표별 세율 및 최고세율이 상당히 하향조정되고 課標階級數도 크게 줄어들어 현재 최저 5%(6%) 최고 55%(66%)의 8段階 超過累進構造를 취하고 있다(相續稅法 第14條). 〈表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6) 崔明根(1987), pp. 73~91 및 陳行燮(1988), pp. 93~106 참조.

〈表 4〉 主要國의 相續稅 稅率構造[1]

(단위 : %)

		遺産課稅型			取得課稅型	
		韓 國[2]	美 國	英 國	日 本	西 獨[3]
名目稅率	最 低	5 (6)	18	30	10	3(20)
	最 高	55(60)	50	60	75	35(70)
課標階級數		8	16	8	14	25

註 : 1) 韓國과 英國을 제외하면 贈與稅率構造도 이와 동일함. 韓國의 경우 贈與稅 最低稅率과 最高稅率이 각각 5%(6%)와 60%(72%)이며 英國의 경우 贈與稅 最低稅率과 最高稅率이 각각 15%와 30%임.
2) ( )안의 수치는 防衛稅를 포함한 것임.
3) 租稅等級 I 기준이며 ( )안의 수치는 租稅等級 IV 기준임. 西獨의 경우 血緣의 親疎에 따라 4개의 조세등급으로 나누어 혈연이 멀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함.

資料 : 崔明根(1987); 財務部 稅制局.

〔圖 1〕 主要國의 課稅標準別 相續稅 算出稅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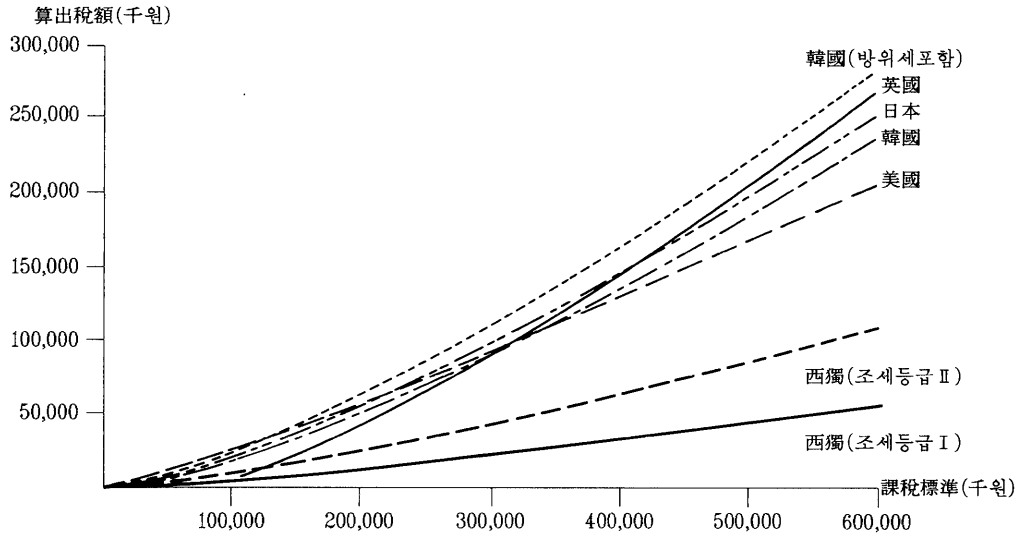

資料 : 崔明根(1987).

우리나라 상속세의 最低稅率은 다소 낮고 最高稅率은 다소 높은 편이며 課標階級數는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圖 1〕을 통해 우리나라와 主要國의 相續稅 課標別 算出稅額水準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相續稅 稅率(防衛稅 포함)은 그 課標別 水準 및 累進程度가 외국의 경우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相續稅稅額은 課稅標準에 稅率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稅額控除를 차감하여 결정되는바 相續稅稅額控除 稅率構造는 단기상속면제 또는 감면(相續稅法 第16條, 相續稅法 施行令 第11條), 國外相續財産 免除(同法 第17條, 同施行令 第12條), 贈與

〈表 5〉 贈與稅 課稅財産의 範圍

贈與財産	(贈與받은 者의 住所가 國內가 아닌 경우에는 國內에 있는 財産에 局限됨)
擬制贈與財産	· 信託利益을 받을 權利의 贈與 (相續稅法 32條) · 第3者 名義登記(名義信託)등의 贈與擬制 (同法 第32條의2, 施行令 第40條의2) · 保險金등의 贈與擬制 (同法 第33條, 施行令 第42條에 의해 施行令 第3條 準用) ·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에게 양도 (同法 第34條) · 低價·高價讓受財産 贈與擬制 (同法 第34條의2, 施行令 41條) · 債務免除益의 贈與擬制 (同法 第34條의3) · 新株引受利益에 대한 贈與擬制 (同法 第34條의4, 施行令 41의3) · 公益事業出捐財産 중 目的外 使用財産 및 未使用 財産 (同法 第8條의2 第4項)
非課稅財産 課稅價額 不算入	· 相續稅法 第34條의5 및 施行令 第42條에 의해 相續稅 課稅價額 不算入規定(同法 第8條의2, 施行令 第3條의2, 第4條) 準用
贈與稅 非課稅	·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증여받은 財産 (同法 第34條의6 第1號) · 우리社株組合 組合員의 株式取得利益 (同法 第34條의6 第2號, 施行令 第41條의2)

稅額控除(同法 第18條 第3項), 申告稅額控除(同法 第20條의2), 그밖에 文化財에 대한 相續稅 徵收猶豫(同法 第8條의3)가 실시되고 있다.

2. 贈與稅

贈與稅 課稅財産의 範圍는 贈與財産과 擬制贈與財産으로 대별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일부 非課稅財産을 제외한 것이다. 이를 항목별로 세분하여 설명하면 〈表 5〉와 같다.

贈與稅의 課稅價額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同一人으로부터 3년이내에 받은 贈與價額의 合計額이 200萬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相續稅法 第31條의3, 施行令 第40條의3). 贈與累積合算期間 및 相續·贈與合算期間은 〈表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단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贈與累積合算

〈表 6〉 主要國의 相續課稅 合算制度

	遺産課稅型			取得課稅型	
	韓 國	美 國	英 國	日 本[1]	西 獨
贈與·相續 合算期間	3년	평 생	7년(tapering rule을 적용함)[2]	3년	10년
贈與累積 合算期間	上 同	上 同	上 同	-	上 同
合算課稅價額	合算時點의 時價	贈與時點의 時價 (贈與稅課稅價額)	左 同	左 同	左 同

註 : 1) 贈與, 贈與間 3년 累積課稅를 1958년에 導入했다가 1975년에 廢止함.
2) 合算되는 贈與에 대한 稅額을 時間의 경과에 따라 체감시켜 줌.
資料 : 財務部 稅制局.

이나 相續·贈與合算은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의 수평적·수직적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美國과 같이 평생을 합산기간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美國, 英國, 日本 등이 증여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합산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가 相續과 贈與에 대해 보다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贈與財産控除는 〈表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親族控除, 山林贈與控除, 農地控除로 구분되는데 지난 1972년 이후 현재까지 親族控除水準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증여재산공제에 있어 특기할 만한 것은 贈與者와 受贈者간의 親族關係有無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등을 두되 配偶者控除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相續稅 및 贈與稅에 있어 配偶者控除가 외국의 경우에 비해 크게 제한되어 있는 것은 부부의 財産所有權을 엄격히 분리한 데 따른 것으로 결혼 후 財産形成에 대한 夫婦共同의 有形·無形의 貢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특히 家庭主婦의 家事勞動에 가치를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贈與稅稅率은 〈表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저 5%(6%), 최고 60%(72%)의 8段階 超過累進率로 구성되어 있는바(相續稅法 第31條의2), 〔圖 2〕를 통해 우리나라와 主要國의 贈與稅 課標別 算出稅額水準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 贈與稅稅率의 과표별 수준 및 누진정도가 외국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贈與稅稅率은 전술한 상속세 세율과 비교할 때 稅率構造 자체는 비슷하나 각 세율이 적용하는 課稅階級金額이 1/2 수준에 불과하여 상속세세율에 비해 課標別 水準이 현격히 높고 累進程度 또한 훨씬 급격하다. 이와 같이 상속세에 비해 증여세의 세율수준 및 그 누진도가 높은 것은 日本과 우리나라 상속과세의 공통된 특징으로 相續·贈與 및 贈與累積合算期間이 짧음에 따라 증여가 相續稅 累進負擔을 회피하

〈表 7〉 贈與財産 控除制度의 變遷

	1961. 1. 1	1968. 1. 1	1972. 1. 1	1982. 1. 1	1987. 1. 1	1989. 1. 1
① 親族控除[1] (相續稅法 第31條, 施行令 第39條의 2, 第40條의4)						
가. 配偶者·直系尊卑屬으로부터 受贈時	50萬원	50萬원	150萬원	左 同	左 同	左 同
나. 其他親族으로부터 受贈時			100萬원			
② 山林贈與控除 (相續稅法 第11條의4)	-	-	-	5年以上 山林全額 免除		左 同
③ 自耕農民이 贈與받는 農地등 免除(租減法 第67條의7)	-	-	-	-	農地 : 6千坪 草地 : 3萬坪 山林地 : 6萬坪 (91. 12. 31까지 贈與分에 한함)	農地 : 9千坪 草地 : 4萬5千坪 山林地 : 9萬坪
④ 營農 1子女가 贈與받는 農地등 免除(租減法 第67條의7)	-	-	-	-	上 同	-

註 : 1) 贈與받은 者가 國內에 住所를 둔 경우에 한함.
2) 親族控除金額은 3년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金額을 뜻함(相續稅法 第31條).
資料 : 財務部 稅制局.

〈表 8〉 贈與稅稅率의 變遷

(단위 : %)

課 標	1967. 11. 29	1974. 12. 21	1979. 12. 28	1988. 12. 26
300千원以下[1]	10	10		
300 " 超過	15	15		
500 " 以下			7 (8.4)	
500 " 超過		20	11(13.2)	
1,000 " "	20	25	15(18.0)	
1,500 " 以下				5 (6)
1,500 " 超過				10(12)
3,000 "	30	30	19(22.8)	
5,000 "		35	23(27.6)	15(18)
7,000 "	40	40	27(32.4)	
10,000 "		45	32(38.4)	20(24)
13,000 "			37(44.4)	
15,000 "		50		
19,000 "			42(50.4)	
20,000 "	50	55		
25,000 "			47(56.4)	
30,000 "		60		30(36)
35,000 "			52(62.4)	
50,000 "	60	65	57(68.4)	
60,000 "				40(48)
100,000 "		70	62(74.4)	50(60)
200,000 "	70	75	67(80.4)	60(72)

註 : 1) 課標가 課稅最低限(10萬원) 미만인 때에는 贈與稅가 부과되지 아니함(相續稅法 第31條).
2) ( )안의 수치는 부가세인 防衛稅(세액의 20%)를 포함한 것임.
資料 : 財務部 稅制局.

〔圖 2〕 主要國의 課稅標準別 贈與稅 算出稅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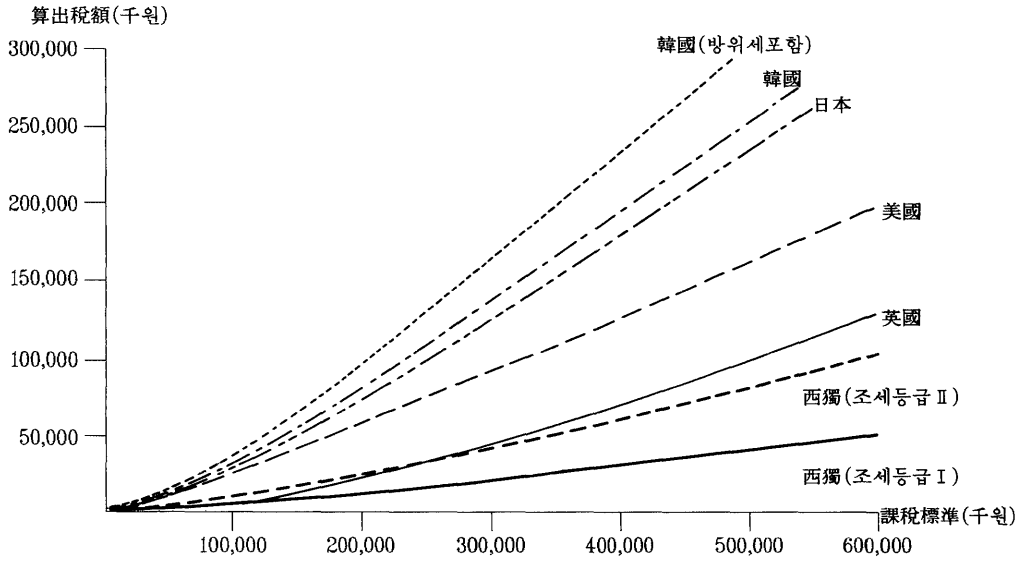

註 : 美國과 西獨의 경우 相續과 贈與에 대한 稅率이 同一함.
資料 : 崔明根(1987).

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英國의 경우 증여세세율이 상속세세율의 1/2 수준으로 낮고 거기에 증여에 대한 세액은 時間의 經過에 따라 체감시키는 tapering rule이 적용되고 있는바 증여를 오히려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租稅의 中立性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속세와 증여세세율에 큰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美國과 西獨 등 많은 나라에서 상속과 증여에 同一稅率이 적용되는 것은 이러한 데 연유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술한 相續·贈與 및 贈與累積合算期間의 長短이 바로 相續稅에 대한 贈與稅의 補完程度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贈與稅稅額控除로는 相續稅稅額控除規定인 국외재산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가 준용(相續稅法 第34條의5, 施行令 第42條)되는 외에 合算課稅 贈與稅額控除(相續稅法 施行令 第40條의3)가 실시되고 있다.

Ⅲ. 相續稅 및 贈與稅 賦課狀況

1987년도 우리나라 相續稅 및 贈與稅 徵收稅額은 각각 327億원과 370億원으로 그 합계가 總租稅收入對比 0.38%, GDP 對比 0.07%에 불과하며 課稅人員도 각각 1,140명과 3萬 305명에 불과하여 死亡者數對比 相續稅課稅件數比率이 1.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9〉를 통해 각국의 相續課稅徵收實績을 비교하여 보면 西獨,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總租稅 및 GNP 對比 稅額比率이

〈表 9〉 各國의 相續課稅 徵收實績

(단위 : %)

	相續課稅/總租稅	相續課稅/GDP	相續課稅件數/死亡者數
韓 國	0.38(1987)	0.07(1987)	1.5(1987)
日 本	1.45(1986)	0.42(1986)	6.4(1985)
美 國	0.79(1986)	0.23(1986)	7.3(1980)
英 國	0.65(1986)	0.25(1986)	7.2(1978)
西 獨	0.26(1986)	0.10(1986)	5.5(1978)
프 랑 소	0.68(1986)	0.30(1986)	15.5(1979)
台 湾	1.0 (1987)[1]	0.14(1987)[2]	-
이탈리아	0.24(1986)	0.09(1986)	-

註 : 1) 國稅基準임.
2) GNP基準임.

資料 : 財務部, 『財產稅制 主要統計資料集』, 1988.
韓國銀行, 『新國民計定』, 1988. 3.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65-87*, Paris, 1988.
___, *National Accounts 1960-87*, Paris, 1989.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8.

우리나라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日本을 위시하여 美國, 英國, 프랑스, 台湾 등은 總租稅 및 GDP 對比 稅額比率이나 死亡者數對比 課稅件數比率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相續稅 및 贈與稅 稅額의 GDP 對比 比率은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요인으로 세분될 수 있다.

$$\frac{\text{稅 額}}{\text{GDP}} = \frac{\text{相續 및 贈與財產}}{\text{GDP}} \times \text{財產捕捉率} \times \text{財產評價率} \times \text{課稅比率} \times (1 - \text{控除比率}) \times \text{稅率}$$

이들 要因中 課稅比率·控除比率·稅率은 상속과세제도 자체에 의해 크기가 결정되고 財產捕捉率·財產評價率은 稅制關聯制度 및 稅務行政要因에 좌우되며 GDP 對比 相續 및 贈與財產 比率은 國民所得水準, 國富의 크기, 富의 階層間分布 등 주로 稅制外的要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相續稅 및 贈與稅의 名目稅率水準은 외국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세액의 GDP 對比 比率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그 課稅標準의 GDP 對比 比率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흔히 金融資產 實名制의 未實施로 인해 金融資產 相續 및 贈與가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不動產이 時價에 비해 크게 저평가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7].

이와 같이 우리나라 相續稅 및 贈與稅 徵收實績이 외국의 경우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그 實質稅率水準 역시 相對的으로 낮은가 하는 것은 資料의 制約으로 분명히 알 수 없다. 우리나라 相續 및 贈與財產 評價率이 외국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相續稅 및 贈與稅 實質稅率도 외국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상

7) $\frac{\text{課稅標準}}{\text{GDP}} = \frac{\text{相續 및 贈與財產}}{\text{GDP}} \times \text{財產捕捉率} \times \text{財產評價率} \times \text{課稅比率} \times (1 - \text{控除比率})$

〈表 10〉 相續稅 및 贈與稅 課稅資料 處理狀況

(단위 : 件, %)

	相續稅			贈與稅		
	1985	1986	1987	1985	1986	1987
總死亡者數(A)	231,771	213,940	235,632			
40세이상男子 死亡者數(B)	107,035	107,763	108,849			
調査人員數(C)	131,902	153,494	149,411			
調査件數[1]	148,311	194,454	178,495	390,170	320,257	291,133
課稅人員數(D)	1,110	1,324	1,140	27,849	26,165	30,305
課稅件數	1,846	2,888	3,542	29,522	32,101	33,365
C/A[2]	56.91	71.75	63.41			
C/B	123.23	142.44	137.26			
D/C	0.84	0.86	0.76	(7.57)[3]	(10.02)	(11.46)

註 : 1) 總蒐集件數 중 處理件數. 여기서 件數는 資料件數를 의미하는 것으로 人員數를 초과함.
2) 연도별 調査人員數나 課稅人員數는 相續 및 贈與 發生年度가 아닌 課稅資料 處理年度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는 없음.
3) ( )안은 調査件數對比 課稅件數의 比率임.

資料 :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各年度.
經濟企劃院, 『人口動態統計』, 各年度.
財務部 稅制局.

속세 및 증여세 실질세율은 다음과 같이 財産評價率뿐 아니라 非課稅 및 控除規定 그리고 名目稅率에 좌우된다.

實質稅率 = 財産評價率 × 課稅比率
× (1-控除比率) × 稅率

특히 相續稅 및 贈與稅의 경우에는 財産稅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名目稅率水準이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實質稅率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보다 엄밀한 자료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相續稅 및 贈與稅 賦課狀況을 1987년 課標階級別 課稅資料를 중심으로 보다 상세히 살펴보려고 한다[8]. 이에 앞서서 우리나라 相續稅 및 贈與稅 課稅資料上의 問題點을 간략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相續稅 및 贈與稅 課稅資料에는 과세당국에 의해 蒐集, 處理된 자료 중에서도 과세처리된 자료만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課稅資料上에 나타나는 財産價額에는 課稅未達 處理된 財産은 물론 公益法人에 출연한 財産, 國家등에 기부한 財産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相續稅 및 贈與稅 課稅資料 처리상황을 살펴보면 〈表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1987년 死亡者數 對比 相續稅 調査人員數 比率이 63.4%, 相續稅 調査人員數 對比 課稅人員數比率이 0.7%로 나타나고 있으며 贈與稅 調査件數 對比 課稅件數의 比率은 11.5%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원수 비율이나 건수비율에 비해 財産價値比率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資料의 制約으로 이에 대한 현황파악은 불가능하다.

둘째, 課稅財産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不

8) 相續稅 및 贈與稅 賦課의 時系列 變化狀況에 대해서는 〈附表 1〉과 〈附表 2〉 참조.

〈表 11〉 相續財産價額의 財産種類別 構成

(단위 : %)

	土地	築造物	有價證券 및 出資의 價額	通貨와 預金	債券	기타	計
1967	50.74	17.48	20.91	2.03	0.75	8.09	100
1972	61.72	15.06	6.22	5.81	1.54	9.65	100
1977	49.16	16.96	20.32	2.56	1.04	9.96	100
1982	59.16	24.21	8.54	1.87	1.17	5.05	100
1983	57.04	26.56	9.73	1.51	0.92	4.24	100
1984	65.57	20.58	8.97	1.51	0.65	2.72	100
1985	59.57	27.71	4.38	1.57	1.83	4.94	100
1986	59.47	26.36	4.37	2.55	2.33	4.92	100
1987	59.90	25.52	6.85	2.83	0.60	4.30	100

註 : 合算된 贈與價額은 제외됨.
資料 :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各年度.

〔圖 3〕 相續 및 贈與 財産價額分布(198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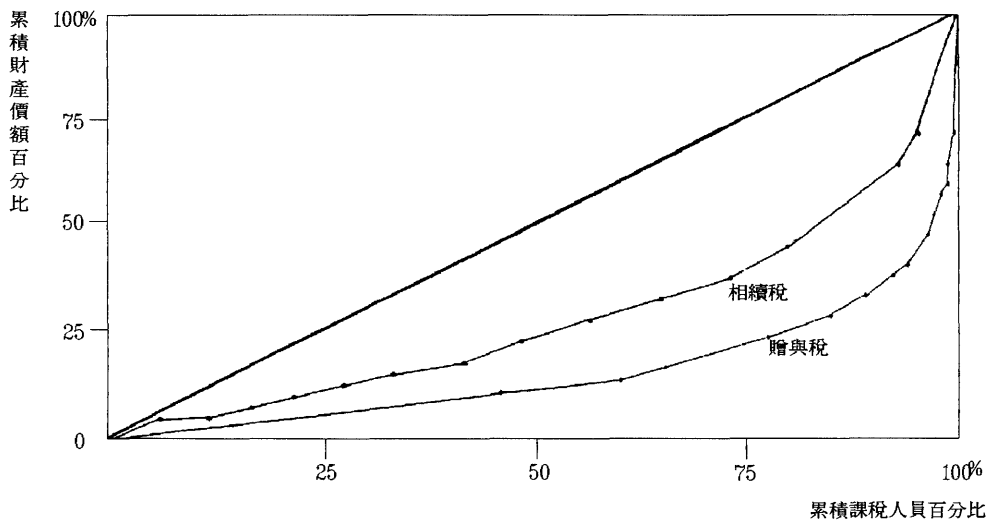

資料 : 〈表 22〉

動産이 時價의 20~30%로 저평가됨에 따라 相續稅 및 贈與稅 財産價額이 실제가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表 11〉은 相續財産價額의 재산종류별 구성이다. 不動産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80년대 이후 더욱 강하게 나타나서 1987년 相續財産價額 중 不動産의 比重이 85.4%에 달하고 있다.

먼저 〈表 12〉와 〔圖 3〕을 통해 相續稅 및 贈與稅 財産價額에 대해 살펴보면 상속세에

〈表 12〉 相續 및 贈與 財産價額(1987년)

(단위 : 百萬원, %)

相續稅			
課標階級	課稅人員	財産價額	納稅者 1人當 財産價額
計	1,140	246,699	216.40
1,000千원 以下	71	3,534	49.77
1,000千원 超過	65(11.9)[1]	4,548 (3.2)	69.96
3,000 "	58(17.0)	4,920 (5.2)	84.83
5,000 "	51(21.5)	4,439 (7.0)	87.04
7,000 "	70(27.6)	6,139 (9.5)	87.70
10,000 "	66(33.4)	5,496(11.7)	83.27
13,000 "	91(41.4)	9,495(15.5)	103.34
19,000 "	78(48.2)	7,955(18.7)	101.99
25,000 "	98(56.8)	13,071(24.0)	133.38
35,000 "	94(65.0)	14,023(29.7)	149.18
50,000 "	91(73.0)	15,843(36.1)	174.10
70,000 "	78(79.8)	14,881(42.1)	190.78
100,000 "	150(93.0)	50,416(62.5)	336.11
300,000 "	31(95.7)	20,279(70.7)	654.16
500,000 "	48 (100)	71,660 (100)	1492.92

贈與稅			
課標階級	課稅人員	財産價額[2]	納稅者 1人當 財産價額[2]
計	30,305	164,686	5.43
500千원 以下	13,918	12,673	0.91
500千원 超過	4,352(60.3)	7,505(10.8)	1.72
1,000千원 超過	5,205(77.5)	15,210(19.0)	2.92
3,000 "	2,258(85.0)	11,283(25.1)	5.00
5,000 "	1,259(89.2)	8,901(29.9)	7.07
7,000 "	962(92.4)	9,041(34.8)	9.40
10,000 "	559(94.2)	7,139(38.7)	12.77
13,000 "	644(96.3)	12,089(45.2)	18.87
19,000 "	352(97.5)	7,767(49.5)	22.07
25,000 "	280(98.4)	8,224(54.0)	29.37
35,000 "	154(98.9)	5,882(57.3)	38.19
50,000 "	160(99.4)	10,006(63.3)	62.54
100,000 "	96(99.7)	10,648(70.1)	110.92
200,000 "	106(100)	38,318 (100)	361.49

註 : 1) ( )안의 숫자는 누적비율(%)임.
2) 3年以內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은 제외됨.
資料 : 財務部 稅制局.

비해 贈與稅 財産價額의 분포가 훨씬 不均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贈與稅 課稅人員의 89.2%가 課標 500萬원이하의 少額贈與者로 나머지 10.8%의 贈與財産價額이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0.1%를 차지하고 있다. 納稅者 1人當 財産價額은 과표계급별로 相續稅가 최저 4,977萬원 최고 14億 9,292萬원, 贈與稅가 최저 91萬원 최고 3億 6,149萬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表 1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財産價額對比 稅額比率(부과세액기준)은 相續稅가 0.08~41.4%, 贈與稅가 3.2~70.9%의 累進構造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財産價額對比 稅額比率은 명목세율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構造가 보다 累進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물론 과표계급이 높을수록 財産價額對比 控除金額比率이 작은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相續稅 및 贈與稅 財産價額 控除內譯을 살펴보면 相續稅의 경우 납세자 1인당 평균공제금액이 富裕階層일수록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납세자 1인당 평균공제금액이 課標 100萬원이하의 경우 4,900萬원이나 과표계급이 높아질수록 커져서 課標 5億원 초과의 경우 2億 8,454萬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相續稅 財産價額 對比 控除金額比率은 최저 19.1%에서 최고 98.8%로 課標階級이 높아질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相續稅 課稅價額控除가 큰 것과 관련하여 그 주요공제내역을 살펴보면 〈表 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表 14〉에 나타나는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주요공제금액 일곱가지의 합계가 전체 공제금액의 40~5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相續稅 課稅價額控除에 있어 債務控除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贈與稅의 경우에는 최저과표계급과 최고과표계급을 제외하면 納稅者 1人當 평균공제금액이 모든 課標階級에 있어 비슷한 수준으로 대략 100萬원을 조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贈與稅 財産價額對比 控除金額比率이 과표계급이 높아질수록 작아지는 것은 당연하며 과표계급별로 최저 1.1%에서 최고 56.3%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의 論議는 財産評價問題에 대한 고려없이 課稅資料 그대로를 검토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不動産의 低評價로 인해서 相續稅 및 贈與稅 財産價額이 實際財産價値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 점에 유의해서 不動産評價額이 時價의 30%라는 가정하에서 과표계급별로 納稅者 1人當 平均相續財産 및 控除의 實際價値와 實質稅率(相續財産價値 對比 稅額比率)을 산출하면 〈表 1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資料의 制約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비중을 모든 과표계급에 동일하게 85.4%로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산출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時價對比 不動産評價額比率뿐 아니라 과표계급별 상속재산구성에 관한 보다 상세한 資料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表 15〉에 의하면 1987년 최저과표계급의 경우 실제가치기준 納稅者 1人當 相續財産이 대략 1億 4,900萬원, 납세자 1인당 控除金額이 대략 1億 4,700萬원으로 대략 0.03%의 實質稅率을 부담하고 있으며 최고과표계급의 경우

〈表 13〉 相續稅 및 贈與稅 賦課狀況(1987년)

(단위 : 百萬원, %)

相續稅			
課標階級	稅額[1]/財産價額	納稅者 1人當 控除金額	控除/財産價額
計	20.49	111.66	51.60
1,000千원 以下	0.08	49.20	98.84
1,000千원 超過	0.20	68.18	97.45
3,000 "	0.43	80.86	95.33
5,000 "	0.41	81.22	93.31
7,000 "	1.09	79.20	90.31
10,000 "	1.67	71.91	86.35
13,000 "	2.07	88.52	84.83
19,000 "	3.58	79.74	78.19
25,000 "	4.10	103.87	77.87
35,000 "	6.30	107.54	72.09
50,000 "	8.89	116.24	66.77
70,000 "	13.18	106.78	55.97
100,000 "	20.13	164.11	48.83
300,000 "	26.03	276.29	42.24
500,000 "	41.37	284.54	19.06

贈與稅			
課標階級	稅額[1]/財産價額[2]	納稅者 1人當 控除金額	控除/財産價額[2]
計	32.97	0.86	15.75
500千원 以下	3.21	0.49	54.22
500千원 超過	3.77	0.97	56.31
1,000 "	7.14	1.14	38.86
3,000 "	10.49	1.26	25.13
5,000 "	13.58	1.27	17.92
7,000 "	16.43	1.25	13.33
10,000 "	19.65	1.20	9.43
13,000 "	24.78	1.25	6.66
19,000 "	27.63	1.08	4.89
25,000 "	31.27	1.12	3.81
35,000 "	35.68	1.31	3.42
50,000 "	45.32	1.19	1.91
100,000 "	53.91	1.18	1.06
200,000 "	70.85	5.92	1.64

註 : 1) 賦課稅額 기준임.
2) 3年以內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은 제외됨.
資料 : 財務部 稅制局.

〈表 14〉 相續稅 主要控除內譯

(단위 : 百萬원)

	1985	1986	1987
基礎控除	11,100	13,240	11,400
配偶者控除	15,070	19,789	19,871
年老者控除	507	852	632
障碍者控除	296	175	160
住宅相續控除	9,784	13,620	14,720
農地등 控除	2,084	1,759	2,362
山林相續控除	2	178	198
計	38,846(47.2)	49,613(42.2)	49,343(38.8)
全體控除	82,262	117,444	127,287

註 : ( )안은 全體控除에 대한 比率(%)임.
資料 : 財務部 稅制局.

〈表 15〉 實際價值換算例(1987년)

(단위 : 100萬원, %)

課標階級	1人當平均		實質稅率
	相續財産	控 除	
1,000千원 이하	149	147	0.03
1,000千원 초과	209	204	0.07
3,000 "	253	242	0.14
5,000 "	261	243	0.14
7,000 "	263	237	0.36
10,000 "	250	215	0.56
13,000 "	312	265	0.69
19,000 "	305	238	1.19
25,000 "	399	311	1.37
35,000 "	447	322	2.10
50,000 "	521	348	2.97
70,000 "	571	320	4.40
100,000 "	1,006	491	6.73
300,000 "	1,958	827	8.70
500,000 "	4,468	852	13.82

註 : 實際價值 相續財産(控除) = {相續財産價額(控除金額) × 0.854 ÷ 0.3} + {相續財産價額(控除金額) × 0.146}
資料 : 財務部 稅制局.

실제가치기준 납세자 1인당 상속재산이 대략 44億 6,800萬원, 납세자 1인당 공제금액이 8億 5,200萬원으로 대략 13.82%의 實質稅率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9].

9) 課稅未達 및 非課稅財産이 제외된 課稅財産에 대한 수치임.

Ⅳ. 相續課稅의 改善方向

1. 相續課稅의 意義

우리나라에서 相續稅 및 贈與稅가 全體租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7년에 0.4%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名目稅率水準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相續課稅는 所得稅나 消費稅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작다. OECD 諸國 중 總租稅對比 相續課稅의 比重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日本의 경우에도 〈表 9〉에서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그 비율이 1.45%(1986년)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相續課稅의 規模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世代間의 財產移轉에 부과되는 相續課稅 자체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대간의 재산이전은 소득의 발생이나 소비지출에 비해 빈도 및 규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相續課稅의 稅收規模가 이와 같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과세는 어느 나라에서나 할것 없이 分配正義의 實現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그 정책적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고 있다. 世代間의 財產移轉은 富의 世襲을 통해 機會의 不均等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분배정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資本主義社會의 必要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대간의 재산이전은 富의 不均等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10]. 따라서 分配正義의 實現을 위해서는 相續 및 贈與에 대한 課稅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死亡後의 相續稅는 생존시의 소득세에 비해 저축 및 투자에 미치는 富의 效果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經濟學者의 通說이다[11].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分配正義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富의 世襲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相續課稅의 機能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相續課稅가 실제로 分配正義의 實現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하는 것은 相續稅 및 贈與稅 稅制의 구체적인 內容과 관련제도의 整備與否에 달려 있다. 따라서 상속과세의 機能强化를 위해서는 稅制의 改善 및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전제로 稅收規模의 擴大調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속과세의 세수규모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가치판단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나라마다 또는 시기별로 국민다수가 富의 不均衡을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줄여나가기를 원하느냐에 따

10) Tait(1983), Kay & King(1983), 劉鍾九(1988) 등 참조. 그러나 富의 不均等이 얼마나 世代間의 財產移轉에 기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結論의 提示는 자료의 제약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세대간의 재산이전이 富의 分布에 미치는 영향은 教育機會의 配分과 教育의 費用 및 便益, 자녀간의 財產配分 및 결혼패턴, 자녀수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에 대해서는 Atkinson(1981), Becker et al.(1979) 등 참조.

11) Stiglitz(1978)는 몇가지 가정을 전제로 相續課稅가 資本蓄積을 저해하며 資本·勞動比率을 떨어뜨림으로써 所得 및 富의 不均等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 준 바 있다.

라 相續課稅의 稅収規模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分配의 지나친 不均衡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相續課稅 稅収規模는 앞으로 상당한 정도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相續課稅 稅収規模의 提高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것은 富裕層의 租稅抵抗이다. 어떠한 稅負擔의 증가도 피하고 싶은 것이 人之常情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分配問題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短見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資本主義의 成敗가 分配問題의 극복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때 相續課稅의 機能强化는 부유층 스스로를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相續課稅 關聯制度 및 稅制의 改善方向을 차례로 제시하려고 한다.

2. 關聯制度의 整備

가. 相續 및 贈與財産 捕捉率의 提高

相續 및 贈與財産의 捕捉程度에 대해서는 資料의 制約으로 정확한 實狀을 파악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融去來實名制의 未實施등 稅制外的 關聯制度의 未備로 상속 및 증여재산의 捕捉率이 상당히 낮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으며 특히 金融資産相續의 포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相續財産價額 중 金融資産의 比率이 지극히 낮다는 사실에서(表 11 참조)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자산의 실명거래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日本의 경우에도 相續財産의 財産種類別 構成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하여 不動産이 상속재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美國과 英國의 경우에는 金融資産이 相續財産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13].

相續 및 贈與財産 捕捉率의 提高는 相續課稅의 機能强化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相續 및 贈與財産의 捕捉率이 낮은 경우 相續課稅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은 물론이겠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일부 포착된 재산에 대해 高率의 累進課稅를 실시하는 것은 租稅回避心理를 더욱 부추기고 資源配分의 效率性을 저해할 뿐 아니라 租稅負擔의 衡平의 原則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相續 및 贈與財産의 捕捉이 잘 이루어질 경우 보다 낮은 세율하에서도 세수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시킬 수 있어 衡平性과 效率性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相續 및 贈與財産의 捕捉率 提高를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방향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발전에 따라 金融資産規模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바, 金融資産 捕捉率의 提高를 위해 金融資産實名制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不動産去來에 있어 官認契約書의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不動産登記書類의 人別電算化를 추진한다.

셋째, 稅源捕捉의 自動性 提高를 위해 死

12) 金完淳(1976)은 1973년에 相續財産價額의 약 반이, 그리고 贈與財産價額의 1/3이 課標에서 탈락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3) 崔明根(1987) 및 Kay & King(1983) 참조.

亡診斷書 및 埋·火葬許可書는 작성 즉시 그 부본을 관할세무당국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한다.

끝으로, 公益法人에 대한 財產出捐이 脫稅手段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公益法人과 特殊關係者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우선적 거래를 규제함과 아울러 공익법인에 대한 稅務監督을 영리법인 수준으로 크게 강화한다[14].

나. 不動產評價의 現實化

相續 및 贈與財產評價의 문제는 그 포착의 문제와 아울러 相續課稅의 公平性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相續 및 贈與財產 評價方法은 여러가지 점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무엇보다도 相續 및 贈與財產價額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不動產 評價의 現實化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동산과 같은 實物資產은 지속적인 가격변동으로 평가의 현실화를 기하기가 무척 어려우며 이런 이유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不動產이 時價에 비해 상당히 低評價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5]. 또한 流動性의 측면에서 不動產이 금융자산에 비해 어느 정도는 低評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不動產이 時價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보유자와 금융자산 보유자간의 租稅負擔의 衡平性을 크게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不動產選好度를 높여 不動產投機를 자극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不動產의 相對的 低評價에 따른 문제점은 金融資產實名制 實施와 더불어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바 地價公示制의 導入과 함께 不動產評價를 現實化하는 일이 서둘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相續課稅制度의 改善

가. 課稅方式

相續課稅는 전술한 바와 같이 遺產課稅型과 取得課稅型의 두가지 유형으로 대별되는바[16], 우리나라의 경우 相續稅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으나 그 보완세인 贈與稅는 취득과세형을 취하고 있어 相續課稅의 일관된 원칙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속과세의 기본목표인 衡平의 追求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속과세의 두가지 유형 중 取得課稅型은 유산과세형에 비해 富의 集中을 抑制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뿐 아니라 應能課稅原則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유형임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특히 取得課稅型의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承繼稅(accessions tax)는 相續稅와 贈與稅를 완전통합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속 및 증여재산을 평생 누적과세하는 제도로 수평적·수직적 형평의 관점에서 볼 때 相續課稅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과세형 상속

14) 1988년말 현재 등록된 公益法人數는 教育事業 1,021개, 社會福祉事業 714개, 奬學事業 547개, 宗教事業 254개, 醫療事業 123개 등 총 3,713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每日經濟新聞」(1989. 3. 28) 참조. 그러나 이들 公益法人에 出捐한 재산의 규모와 내역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15) Tait(1983) 참조.

16) 比例稅일 경우 두 類型의 차이가 없어짐.

과세는 유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稅務行政이 복잡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相續人의 稅額總額이 遺産分割方法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遺産의 僞裝分散을 통한 租稅回避問題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17].

이하에서는 이상의 論議를 바탕으로 相續稅 및 贈與稅의 課稅方式改善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현행 遺産課稅型 相續稅를 取得課稅型 相續稅로 전환하여 日本의 경우와 같이 相續稅 및 贈與稅의 課稅類型을 取得課稅型으로 통일하되 상속인의 稅額總額이 유산의 분할방법에 따라 큰 변화가 없도록 하는 制度的 裝置를 삽입하도록 한다. 日本의 相續稅制度는 遺産의 分割方法이 상속세 세액총액을 좌우하는 데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相續稅 稅額總額을 法定相續人의 法定相續分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日本의 相續稅는 取得課稅型이면서 동시에 遺産課稅型의 要素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8].

둘째, 相續·贈與 및 贈與累積 合算期間을 상당기간 연장함으로써 상속세에 대한 贈與稅의 補完機能을 강화함과 동시에 租稅의 中立性原則을 살려나가도록 한다. 합산기간이 짧은 상태에서는 증여가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贈與稅稅率을 相續稅稅率에 비해 높게 책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조세의 중립성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相續稅와 贈與稅를 하나의 承繼稅 形態로 통합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Simons(1970) 이래 相續 및 受贈財産을 소득의 일부로 보아 相續課稅를 所得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控 除

相續 및 贈與財産控除의 改編方向은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住宅控除, 農地·草地·山林地控除, 企業相續控除 등 특정형태의 재산에 대한 控除는 폐지한다. 재산형태별로 상속과세에 차등을 두는 것은 租稅負擔의 水平的 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稅負擔이 상대적으로 작은 재산으로의 僞裝 및 그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資源配分의 效率性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재산형태별 세부담의 차이가 市場機能을 통해 財産價格에 반영된다고 볼 때 특정형태재산에 대한 稅負擔輕減政策의 支援效果는 短期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각종 人的控除는 配偶者控除, 未成年者控除, 障碍者控除의 세가지로 가지수를 줄여 그 수준을 현실화하되 특히 配偶者控除의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결혼기간동안 부부가 재산을 모으는 데는 서로가 有形·無形의 貢獻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配偶者控除水準을 結婚期間別로 차등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기간동안 모은 재산에 대한 부부의 共同所有權을 인정하여 配偶者相續 및 贈與를 전액 공제하는 방안을

17) 課稅類型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崔明根(1987), 陳行雯(1988) 및 Sandford(1987) 참조.

18) 各國의 相續稅 및 贈與稅 制度를 비교해 볼 때 현행 우리나라 제도는 課稅類型이나 그밖의 여러가지 면에서 日本의 制度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相續稅 基礎控除 및 子女控除, 贈與稅 親族控除 등은 累進課稅體系下에서 그 稅負擔輕減效果가 부유층에 보다 유리하게 나타나므로 폐지하여 相續課稅의 普遍化를 기하고 그에 따른 중산층 이하 세부담의 증대는 다음에서 다룰 세율로서 조정하도록 한다.

다. 稅 率

稅率調整의 基本方向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술한 부동산 평가의 현실화, 합산기간의 장기화, 각종 공제의 폐지 등으로 相續稅 및 贈與稅 課稅財産의 課標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稅率의 課標別 水準 및 累進程度를 하향조정한다. 相續課稅는 分配正義의 實現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세율이 높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저축 및 투자의욕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租稅回避心理를 만연시켜 상속과세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오히려 障礙要因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適正稅率의 문제는 價値判斷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결론을 내리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 相續稅 및 贈與稅 稅率水準이 외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다는 사실에 비추어 相續稅 및 贈與稅 課標擴大에 따라 그 稅率水準을 다소 낮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어떠한 稅負擔의 增加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는 租稅抵抗의 문제를 떠나서 납세자간의 衡平의 問題를 야기하고 經濟의 安定을 크게 해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相續稅와 贈與稅의 稅率段階를 단일화함과 아울러 각 단계의 세율이 적용되는 課稅階級金額의 差異를 전술한 合算期間의 長期化程度에 따라 축소조정한다.

▷ 參 考 文 獻 ◁

國稅廳, 『國稅廳 20年史』, 1986, 3, 第2編.

———, 『國稅統計年報』, 各年度.

金冕圭, 『財産稅稅法』, 稅法學講義(Ⅳ), 조세통람사, 1987.

金完淳, 「相續稅負擔의 國際比較와 改善方向」, 『韓國經濟』, 1976. 2.

稅制發展審議委員會, 『稅制發展研究報告書』, 1985, 12, 第4編.

劉鍾九, 「우리나라 都市家口의 階層別 所得 및 厚生不平等度의 推計와 分析」, 『韓國開發研究』, 1988 여름.

財務部, 『財産稅制 主要統計資料集』, 1988.

陳行燮, 『相續·贈與稅制度의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國立稅務大學 租稅問題研究所, 1988. 11.

崔明根, 『우리나라 相續課稅制度의 改編方案 研究』, 韓國經濟研究院, 1987.

Atkinson, A. B., "Inheritance and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Public Policy and the Tax System*, 1981.

Becker, G. S. & N. Tomes, "An Equilibrium Theory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December 1979.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87.

Kay, J. A. & M. A. King, *The British Tax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OECD, *The Taxation of Net Wealth, Capital Transfers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1979.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8.

Sandford, C., "Death Duties : Taxing Estates or Inheritances," *Fiscal Studies*, November. 1987.

Simons, H. C., *Personal Income Tax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Stiglitz, J. E., "Notes on Estate Taxes, Redistribution, and the Concept of Balanced Growth Path Inc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pril 1978.

Tait, A. A., "Net Wealth, Gift, and Transfer Taxes", *Comparative Tax Studies*, 1983.

〈附表 1〉 相續稅 諸比率

(단위 : %)

	課稅人員/死亡者	稅 額/GNP	財産價額/GNP	課 標/財産價額	稅 額/課 標	稅 額/財産價額
1967	-	0.02	0.16	61.07	28.51	13.75
1968	-	0.02	0.16	52.11	21.99	11.46
1969	-	0.02	0.18	46.76	27.85	13.02
1970	0.27	0.05	0.25	62.49	32.93	20.57
1971	0.34	0.05	0.25	60.43	30.23	18.27
1972	0.39	0.03	0.19	46.20	28.44	13.14
1973	0.32	0.02	0.13	50.17	35.01	17.50
1974	0.14	0.02	0.12	46.90	39.95	18.74
1975	0.10	0.10	0.17	70.53	78.29	55.22
1976	0.11	0.04	0.19	38.93	53.97	21.01
1977	0.13	0.02	0.10	45.40	48.99	22.24
1978	0.12	0.01	0.06	45.92	44.94	20.64
1979	0.13	0.01	0.05	34.12	36.53	12.47
1980	0.13	0.01	0.07	35.65	44.21	15.77
1981	0.39	0.05	0.21	56.02	43.65	21.45
1982	0.35	0.04	0.18	48.44	45.87	22.22
1983	0.44	0.04	0.19	45.16	43.28	19.37
1984	0.50	0.06	0.25	50.96	47.47	24.19
1985	0.48	0.04	0.21	45.57	40.98	18.68
1986	0.62	0.06	0.27	48.07	44.58	21.43
1987	0.48	0.05	0.25	47.53	44.16	20.91

註 : 1) 稅額은 賦課稅額 기준임.
2) 合算된 贈與價額은 제외됨.

資料 :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各年度.
經濟企劃院, 『主要統計指標』, 1988.
_____, 『人口動態統計』, 各年度.

〈附表 2〉 贈與稅 諸比率

(단위 : %)

	稅 額/ G N P	財產價額/ G N P	課 標/ 財產價額	稅 額/ 課 標	稅 額/ 財產價額
1967	0.04	0.27	90.78	15.37	13.95
1968	0.04	0.27	86.70	16.71	14.48
1969	0.03	0.19	75.79	19.94	15.11
1970	0.04	0.21	73.67	23.05	17.00
1971	0.04	0.23	75.77	23.05	17.46
1972	0.02	0.16	68.36	20.48	14.00
1973	0.02	0.13	66.93	27.36	18.33
1974	0.02	0.11	65.01	26.71	17.36
1975	0.10	0.35	81.63	35.69	29.14
1976	0.02	0.12	59.58	26.67	15.90
1977	0.04	0.17	66.06	36.90	24.37
1978	0.02	0.13	62.78	30.00	18.25
1979	0.01	0.12	46.16	25.35	11.70
1980	0.02	0.10	73.61	28.49	20.97
1981	0.04	0.17	78.07	32.92	25.70
1982	0.04	0.19	76.34	28.08	21.44
1983	0.05	0.25	70.76	30.75	21.17
1984	0.05	0.21	78.68	33.64	26.47
1985	0.06	0.21	80.90	34.77	28.13
1986	0.05	0.18	82.66	35.32	29.20
1987	0.06	0.17	84.25	39.14	32.97

註 : 1) 稅額은 賦課稅額 기준임.
2) 3년이내 同一人으로부터 받은 贈與價額은 제외됨.

資料 :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各年度.
經濟企劃院, 『主要統計指標』, 1988.